

2016

**학교협동조합
공증면제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2016. 10. 27

주최 : (로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후원 : (로고) 서울특별시 (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로고)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협동심과 공동체성을 배양하고 또래와의 소통을 통해 자기주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통로입니다. 교육의 본모습을 찾고, 교육의 변화를 일구기 위한 운동입니다.

교육청을 비롯해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동참한 가운데 시작된 학교협동조합 사업이 3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전국에 30여 곳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현장의 최대 현안인 공증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10월 27일(목) 14:00 ~16:00

○ 장 소 : 서울 가재울고등학교 시청각실

○ 연락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담당

(Tel : 070-4267-5044)

▶ 토론회 순서

일 정	내 용	발표자	
14:00~14:05	▪ 사회 : 인사말	조현경 센터장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14:05~14:25	▪ 발제 : 공증 면제를 위한 쟁점 및 제도개선 방안	주수원 (서울시학교협동조합지원단)	
14:25~14:35	지정 토론	▪ 현장사례를 통해 본 공증 면제 필요성	유기만 단장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14:35~14:45		▪ 대학생협연합회의 공증 면제 사례 와 장점 소개	권종탁 사무국장 (한국대학생협연합회)
14:45~14:55		▪ 학교협동조합 공증 면제 추천 시 쟁 점 및 애로점	오용환 연구사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14:55~15:05		▪ 법률적 시각에서 학교협동조합 기준 검토	양동수 변호사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15:05~15:15		▪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예상쟁점 및 지원 방향	이용환 담당관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15:15~15:55		▪ 플로어 토론	청중과의 질의응답 및 토론
15:55~16:00	▪ 폐 회	좌장	

공증면제를 위한 생점 및 제도개선 방안

서울시학교협동조합지원단 주수원

교육의 새로운 변화 학교협동조합이 이제 50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3년 서울의 영림중과 경기도의 복정고등학교로 시작된 학교협동조합은 건강한 매점을 학교구성원들이 직접 운영하자는 취지가 컸습니다. 처음에 2개 학교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교육부에 인가신청을 했을 때 매점사업이니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맞지 않냐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협동조합은 단순히 매점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1인 1표로서 함께 협동의 운영경험을 하고 생생한 경제체험을 하는 교육적 의미가 컸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학교협동조합 인가를 내주었고, 2014년에는 7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부산의 금성초등학교에서 농촌 방과후 강사 수급의 어려움을 학부모들이 함께 해결하고 생태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새로운 학교협동조합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과 경기도 아닌 경북의 사립학교인 문경여고에서 학교협동조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강원교육청, 경남교육청에서도 학교협동조합 설명회, 시범사업을 하며 여러 학교들이 생겨 올해만 해도 현재까지 16개 학교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인천교육청, 세종교육청 등에서도 학교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며 여러 교육과 활동들을 펼치고 있으며 학교협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전국적으로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 표와 같이 인가신청과 준비중인 학교까지 포함하면 내년 초에는 50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생겨날 전망입니다. 지역별 학교협동조합 현황은 글 마지막에 첨부합니다.

	13	14	15	16	합계	인가신청	준비중
초		1		5	6	2	
중	1	1		3	5	1	1
고	1	5	7	8	21	3	9
합계	2	7	7	16	32	6	10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학교협동조합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그동안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서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활동을 하며 문제해결능력을 키워가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화된 취지 되었으며, 진로교육법이 제정·시행('15.12.23.)됨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차원의 진로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4일 발표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2016~2020)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중·고등학교에 '20년까지 진로전담교사를 100% 배치하고, 초등학교에는 '16년부터 우선 보직교사로 임명 배치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교육부의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서도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로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 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 기존과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창의적 진로설계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학교협동조합입니다. 책 속의 가상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절실하게 느끼는 주변의 필요를 바탕으로 함께 경제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죠. 다만 학생들만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함께 협업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교육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국의 각 교육청들이 다양한 학교협동조합 관련 활동들을 지원하는 조례 및 계획을 시행하거나 수립할 예정입니다.

표1. 전국 학교협동조합 조례 및 계획

지역	내용
서울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2015.10.8. 시행) 제2조 (정의)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경기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5078호, 2015.11.4.제정) 제2조(정의) 7항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사회적협동조합" 및"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동조합 기본계획 마을교육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공익적 기여를 하고자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교육청 【모두를 위한 교육 2기 중기계획(5-2-3: 교육재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사회적기업육성법(2012.8.2. 시행) 및 협동조합 기본법(2012.12.1.시행) ※ 강원도교육청은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2016.10.월 현재)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학교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협동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는 복지와 상생의 교육경제공동체”로 정의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수의계약 가능조항 마련 시 방과후사회적협동조합이 학교와 위탁계약 등으로 물의를 일으킬것이 예상되어, 일차적으로 통용되는 학교협동조합 정의 “ 사회적협동조합 중 사업장의 실제 소재지가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제3조 및 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제1호(대학 제외) 에 따라 학교 내에 위치 할 것”으로 명시하여, 학교협동조합만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 2기 교육감 공약 6-4-1 : 교육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 2016 교육협동조합 특화과정 연수 기본계획 : 정책기획조정관-1087 (2016.7.2.)호 ○ 2016. 9. 21.(수) ~ 11. 9.(수) 매주 수요일 15시~18시 연수 진행. ○ 조례제정 준비, 17년 2개 시범학교 진행 예정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기본법 및 시행령('12.12.1.),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12.8.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15.6.2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16.3.14.)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안내('16. 10.) ○ 사회적경제 협의체 구성('16. 10.)

청소년들의 활발한 협동조합 활동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학교협동조합들에는 많은 과제도 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있으며 이를 지역사회와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들이 다수인 학교협동조합의 특성과 맞닿아있는 중요한 문제로 총회 의사록 공증문제가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창립총회 → 교육부 인가 → 공증 및 등기 → 사업자등록까지 일련의 절차를 밟아 설립·운영됩니다. 창립총회 및 정기총회 시, 주 참여자인 학생 조합원 역시 참석하여야 총회가 이뤄집니다. 이는 교육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협동조합이란 방식의 기업을 경험하고 주체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총회에서 임원의 변경, 정관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때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총회가 진실되게 성립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공증’ 이슈가 등장합니다. 참석한 구성원들이 인감증명서를 내는 촉탁공증과 공증이 가능한 변호사가 참석하여 진실됨을 보장하는 참관공증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인감증명서를 대신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여러 불필요한 오해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전국의 각 교육청을 통해 인감증명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인가 후, 법인 등기를 위하여 의사록공증을 위해 학생들의 서류를 걷는 과정에서 법인 등기 시점을 놓쳐, 다시 총회를 진행함.

(사례2) 학생의 협동조합 활동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하나, 부모가 관련 서류 제출에 동의하지 않아 활동을 하지 못함. 조합 활동이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학부모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은 조합원이 되고자 하고, 학부모는 이를 반대하는 경우

(사례3) 조손가정 학생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양부모의 인감 및 동의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 연락 두절된 아버지와 연락을 취하는 과정이 학생에게 굉장히 심적인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었음.

(사례4)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인감을 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발생.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변호사가 참석하는 참관공증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변호사 참관비용이 100~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하는 학교협동조합 특성상 이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작은 시·군 지역에서는 학교협동조합 관련 공증을 할 수 있는 변호사 및 법무법인을 구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은 총회를 공증 가능한 변호사의 일정에 맞추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의 특성상 매년 교체되는 임원의 변경 등으로 매년 공증을 해야 하는데, 단순 계산해서 내년 초 50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정기총회를 위해 최소 100만원 씩 5000만원의 비용을 써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전국의 각 교육청들은 다음과 같이 학교협동조합 총회의사록 공증면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2. 각 교육청 별 총회의사록 공증면제 필요성에 대한 입장

지역	내용
서울	의사록 공증면제는 필요함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학교)협동조합의 경우 학생 조합원수가 많으며, 미성년자로 인한 행정 절차 부담 ○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구성원 변화가 없지만, 교육(학교)협동조합의 경우 1년 단위로 구성원의 변화가 매우 심하며, 그에 따른 이사진도 매년 변동이 있음 ○ 교육(학교)협동조합의 확산과 교육적 가치 실천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응할 사회적경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공증면제 필요 ○ 교육(학교)협동조합의 주요 주체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에 따른 의사록공증면제 어려움이 학생들의 활동에 제약 사항으로 작용함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발생하는 의사록 공증을 위한 변호사 참관비용(100~150만원 소요) 부담 ○ 학교협동조합 참여 활동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학교장 등 관리자에게 폭넓게 인지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변호사 참관비용 부담을 학교 또는 소규모 학교협동조합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활성화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수월성, 다양한 컨설팅을 위해서는 학교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시도교육청이 학교협동조합 총회 등을 관리, 감독하는 방안 제안
경남	학생들이 주 조합원인 학교협동조합이 교육적,문화적,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설립되어짐에도 까다로운 설립 절차로 인해 교육공동체가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포기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는 것은 「협동조합기본법」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며, 의사록 공증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전남	함평영화학교의 경우 지적장애인들을 가르치는 특수학교로, 학생들이 졸업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조합원으로서 유지할 유인이 큼. 이 경우 성년이 되어도 계속 후견인이 필요하여 의사록 공증면제 필요성이 큼

출처: 전국 학교협동조합 현황 및 공증면제 관련 교육청별 입장 정리(2016.10.12 기준)

총회의사록 공증면제는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증으로 인한 어려움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학교협동조합을 하기로 한 이상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선례도 많습니다. 2010년 2월7일부터 2016년 5월 10일까지 총 380개의 비영리법인이 면제 대상으로 고시되었으며 협동조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증면제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를 살펴보면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여기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의 문구가 있어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민법이 아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제외되는 것은 아닌가란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2016년 5월 당시 법무부 담당자인 김영준 법무관(02-2110-3775)에게도 문의해본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다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만으로 제한하는 문구는 아니라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엄밀하게는 향후 입법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나 현재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포함해서 해석하고 있으며, 고시에서도 다른 협동조합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포함해서 공증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작년부터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대학생협연합회 및 대학생협협동조합 등이 공증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으로는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총회의사록 공증면제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무부(법무과)에 총회의사록 공증면제 추천 서류를 보내면 법무부 판단에 의해 ‘의사록인증제외대상 법인’ 고시에 포함되면(추가고시), 해당 조합은 등기신청 시 공증문서(총회의사록) 대신 법무부 고시를 내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동 조항에서는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경우에는 학교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는 과정에서 관련부처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되고 인가되며 이미 검증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의 경우 내부적인 절차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공증면제 시 감독기구에 대한 고민, 한시적으로 교육청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협연합회의 경우 연합회에서 이러한 총회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했는데, 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연합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인 교육부 대신 ① 교육청 내지 ② 사회적기업진흥원, ③ 학교 등이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협동조합에 이사나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스스로가 자신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교육청, 사회적기업진흥원이 관리감독기구로서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의 자문을 받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법무부 담당자인 이동현 법무관(02-2110-3169) 역시 가능하다는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우 기재부와 논의 중 진흥원의 취지상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진흥원보다는 교육청이 보다 적합할 것입니다. 다만 현장의 관리 감독에 대한 실무가 어렵다면 각 지역의 진흥원 산하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의 경우 서울시에서 모든 업무를 부담하기 어려워 각 자치구에 이관했습니다. 자치구에 따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었기에 처음에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각 구청에 일자리경제과나 취업지원과 등에 협동조합 담당자가 생겼으며,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무조건 업무를 이관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사회적경제센터 설립을 지원하여 협동조합과 관련한 실무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2013년부터 먼저 설립된 서울과 경기 교육청에서는 학교협동조합 관리 감독 업무를 맡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육청에 학교협동조합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곳은 다음 표와 같이 8곳입니다. 부산과 경북의 경우 학교협동조합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확인된 담당자는 없습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학교협동조합 담당자만 4명입니다. 지역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체계를 잡아갈 수 있으며 해야 할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를 위해 내년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교육청에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표3.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교육)협동조합 담당

지역	부서	직위	성함
서울	참여협력담당관	주무관	박정수
		주무관	김정천
경기	마을교육공동체 기획단 협동조합지원담당	사무관	오인원
		장학사	김경래
		행정6급	송주백
		행정6급	김동현
강원	소통협력담당	사무관	권명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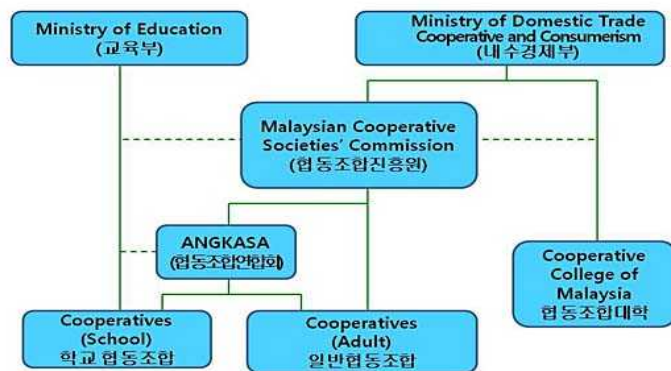
		주무관	허경진
경남	학교지원과	지방교육행정주사	김해숙
인천	정책기획조정	전문직	권조환
전남	교육과정과	주무관	정수현
세종	학교혁신과	주무관	전창미
광주	교육자치과	주무관	유수정

물론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현재 비영리법인 업무로서 평생학습정책과에 담당 연구사 1명이 다른 비영리법인 업무와 함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살펴 본 대로 교육부의 다양한 정책들과 연계점이 많은 만큼 학교협동조합 관련하여 교육부 차원에서 연관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인력 확보와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중심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되어야 하겠지만, 기재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미 기재부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년)」에도 “인력 양성 : 교육 확대 및 인력 유입 활성화” 방안으로 “초중등 의무교육 및 경제교육에 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협동조합형 중·고등학교 매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실생활 체험 유도”하는 계획과 함께 “각 지역별 거점 국립대학과 협의를 통해 협동조합 관련 교수직 신설 추진” 등의 학교협동조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2019년)」에도 학교협동조합이 중요한 계획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의 학교협동조합 관련한 교육부와 기재부, 협동조합진흥원의 조직도입니다.

그림1. 말레이시아 학교협동조합 정부 지원체계



얼핏 교육과 경제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4월 11일 발표

한 「산학협력 5개년('16~'20) 기본계획」에서도 다양한 산학협력 협동조합 창업 모델을 제시하며, 협동조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창업은 창업실패 위험을 분산하고 실패의 경험과 노하우가 대학 내에서 공유·축적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대학생·졸업생·교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 모델, 유사 업종의 가족회사와 대학(산학협력단 및 가족회사 관련 교직원 등)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방식, 학교기업과 소규모 지역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방식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삶과 연계된 통합교육으로서 학교협동조합은 앞서의 말레이시아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에서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 영국 맨체스터 인근의 한 학교가 처음 협동조합학교로 전환된 이후 2015년 843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전국 102개 지역에서 50,000 여 개 소규모 조합으로 나뉘어 4백만 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나라만의 국한된 흐름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협동조합은 너무 빨리 온 미래일 수 있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해야 아이들에게 충분히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협동조합은 2~3걸음 앞에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학교도 있고, 자치행정과 교육행정 사이에 끼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정책적으로만 앞서나가 자칫 학부모, 교사들에게 짐으로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직간접적으로 만나온 학교협동조합 구성원들의 에너지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만큼 강했습니다. 특히 4년 동안 만나오며 학생들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며 교육이란 이런 것이구나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과 얻은 가장 큰 것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여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 교사, 학부모와 함께 논의하고 결정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며 협업의 원리를 체득해 갑니다.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언어를 익혀갔다면, 나 스스로를 설명하는 자기 언어를 익히는 부분도 큼니다. 학교협동조합을 경험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감이 넘치며 삶의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학교협동조합이야말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익혀야 할 선행학습의 과목이지 않냐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학교협동조합의 풍부한 교육적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학교협동조합이 교육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내외 관계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많은 과제 중에 총회의사록 공증면제는 정책적 판단으로 쉽게 해결책을 만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도 학교협동조합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

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학교협동조합 공증면제 이슈에 대해 개괄을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와 세부적인 논점은 이후 지정토론자 분들이 해주실 것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논점에 들어가면 다음처럼 공증면제 하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기준에 있어 지역별로 의견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정책적, 실무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지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관계기관들이 있는 만큼 논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정기관과 학교협동조합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방법을 찾아 법적 기준을 재검토하며, 정책적 기준들을 합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표4. 공증면제를 위한 학교협동조합 기준에 대한 각 교육청 입장

지역	기준
서울	기준에 대한 의견은 좀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 사업장은 학교에 위치하고 그 이익금은 공동체의 공익목적 사업과 학생복지증진으로 환원 ○ 협동조합 운영 학교 단위별로 미성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대다수인 강원도의 경우 학생수 또는 비율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학생들의 사회적경제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모두 교육청의 관리 감독의 대상으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향후 어떤 형태의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될지 알 수 없으므로 '순수 교육적 활동' 여부를 판단해 기준을 삼아야 할 것임
경남	미성년자 수를 기준으로 공증 면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봄. 소규모학교인 경우 대부분 농·산·어촌에 위치한 학교로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공증을 받기란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출처: 전국 학교협동조합 현황 및 공증면제 관련 교육청별 입장 정리 (2016.10.12 기준)

먼저, 학교협동조합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어려움과 필요성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한국대학생협연합회에서는 올해 초 연합회와 회원조합들이 공증면제 되었던 과정을 소개하면서 초중고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선례를 보여줄 것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는 현재 학교협동조합을 포함해 여러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협동조합을 관리감독하며 생기는 어려움과 현실적인 고민점을 얘기해줄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에서는 그동안 서울시학교협동조합지원단을 도와 법률적 자문을 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공증면제 시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검토해줄 것입니다.

현재 학교협동조합과 관련한 법이 없으며 전국적으로도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끝으로 서울시교육청

에서는 교육청이 관리감독기관 역할을 할 때 현실적으로 고민해야할 지점과 현재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 모색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정토론자 외에도 전국적으로 모인 학교협동조합 당사자, 각 교육청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함께 나누며 함께 방안을 모색해가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검토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여기 모인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봤으면 합니다.

표5. 전국 학교협동조합 현황 (16.10.6 기준)

지역	구분	학교명	인가일	조합원수			주요사업
				학교		학교 밖	
				미 성년	성년		
서울	중	영림중	13.9.3	6	103	21	매점
	고	독산고	14.8.19	80	45	26	매점
	고	삼각산고	15.2.25	130	77	6	매점
	고	삼성고	15.8.25	90	47	15	매점
	고	선사고	15.10.20	94	66	9	매점
	중	국사봉중	16.2.2	40	47	2	매점
	고	가재울고	16.2.15	27	47	3	매점
	초	월천초	16.3.11	-	40	11	방과후
	초	모기동마을학교 (양화초)	16.6.27		13	10	방과후
	고	계성고	16.7.28				매점
	중	길음중	16.8.26	54	40	1	매점, 현장체험학습
	초	신천초	16.9.7	-	39	2	방과후
	중	한울중	16.9.20	2	11	2	매점
	초	금북초	인가신청				방과후
고	성수공고	총회준비중				창업	
경기	고	북정고	13.09.03	215	52	1	학교가게
	고	덕이고	14.01.08	1117	121	0	학교가게
	중	의정부여중	14.08.07		33		학교가게
	고	한국문화영상고	14.12.19	6	54	11	학교가게
	고	한국도예고	14.12.19	65	25	16	학교가게
	고	홍덕고	15.02.25	289	160	65	학교가게
	고	기흥고	15.03.24	65	52	0	학교가게
	고	신길고	15.12.02	82	72	11	학교가게
	초	조현초	16.02.15		16	2	돌봄, 방과후
	고	별내고	16.04.22	54	64	3	학교가게
	고	현암고	16.06.27	95	50	10	학교가게
	고	문산수역고	16.09.26				출판
	고	운양고	인가신청중				학교가게
	고	분당경영고	16.08.26	모집중			학교가게 (지역단위 교육협동조합)
	고	산본공고	모집중				
	고	매홀고	모집중				
중	장호원중	모집중					
강원	초	금병초등학교 (춘천)	' 16.5.26.	24	5	33	·학교매점/학부모 조합원 방과후학교 운영/지역 연계

지역	구분	학교명	인가일	조합원수			주요사업
				학교		학교 밖	
				미 성년	성년		
							체험학습(김유정 문학촌)
	초	연당초등학교 (영월)	' 16.9.7. (창립총회 인가신청)	35	15	17	·지역기반과 연계한 친환경 생태교육(아로니아 생산 및 가공, 판매 활동)/ 학교교육 공동체 기반 마을교육과정 운영
	고	한샘고등학교 (춘천)	' 16.6.1.	30	15	5	·학교매점/학생물품 공동구 매/장학사업
	고	원주고등학교 (원주)	' 16.12.21. (총회 예정)	400	50	30	·북카페 '소꿉놀이터' 운영 을 통한 창업 및 진로교육/ 학생 조합원 장학사업 노 숙인 무료급식 지원 장애 인 시설 기부 활동 등
	고	현천고등학교 (횡성)	' 16.12.6. (총회 예정)	21	14	5	·학교카페 운영 ※ 현천고는 공립형 대안 고등학교로 전교생이 기숙 사 생활로 매점, 카페 등 이용률이 높음
경남	고	범어고	2016.9.28. 교육부 인가신청	44	3	1	학교 매점
	고	사천여고	2016.10.6	8	8	2	학교 매점
	고	태봉고	창립총회 준비중				직업체험프로그램
	고	보광고	창립총회 준비중				
	고	물금고	창립총회 준비중				
전남	고	함평영화학교	16.8.23. 교육부 인가신청	58	9	4	지적장애인 학생들의 공예품, 국화 판매
전북	중	전라중학교	창립총회 (16.5.18)				
경북	고	문경여고	15.8.10				
부산	고	부산국제고	14.3.31 (미인가)				
	고	만덕고	창립총회 (16.7.18)				
	초	금성초	14.7.23				

교육 [학교] 협동조합 공증면제의 필요성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유 기 만

1. 경기도 교육(학교)협동조합의 운영지원 방향

□ 조합을 통한 학교와 마을 간의 결합

- 경기도는 학교와 마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발전시켜 학교교육의 범위를 확장하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 제공과 다양한 교육적 필요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함
-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인 학생중심 교육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관계 형성과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협력과 협동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주·세계 시민으로의 성장을 육성 지원하고자 함

□ 교육(학교)협동조합 운영의 확장성

- 학교단위 조합설립 및 운영
 - 학교 구성원과 주민이 함께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민주적·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최적의 교육협동조합 모델로서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설립절차의 복잡성, 학교업무 부담, 구성원의 주기적 변동 등 저해요인 극복과 지속적인 운영 지원이 필요함
- 지역단위 조합설립 및 운영
 - 교육협동조합 활성화와 학교현장의 설립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역(경기도)단위로 교육공동체가 설립한 교육협동조합을 통해 단위학교 조합설립을 대체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하는 대안적 모델로서,
 - 학교에서는 분점형태로 조합운영을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적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정보 등을 본점으로부터 제공받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

2. 공증 절차 이행에 따른 문제점

□ 공증 절차

- (창립)총회나 법인등기 변경 시 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아야 하는데 비용 발생과 행정 절차이행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 경기도 내 학교 대부분은 참관공증 시 비용의 과도한 부담으로 촉탁공증을 이용하고 있으며, 촉탁공증 시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법률행위를 충족하고자 법정대리인인 양부모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음

※ (촉탁)공증 시 미성년자 조합원 구비 서류

- ▶ 본인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인감증명서 발급, 친권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친권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미성년자보호자동의서 지참 → 친권자와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 ▶ 미성년자보호자동의서(친권자 2인 인감날인)
- ▶ 친권자(2인) 인감증명서

□ 현장 애로사항

- 교육(학교)협동조합의 경우 학생 조합원수가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이르며,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록 공증을 처리하는데 행정부담과 학생들에게 서류제출 등을 제출토록 하는 과정에서 비교육적인 요소*들이 발생될 수 있음은 현실적으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양 부모가 조합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경우, 한부모 가정 등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학생 편에 학교에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이는 학생들의 교육적 접근으로 운영되는 교육(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개인의 가정환경 노출로 인한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법률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조합(법인) 설립에 동의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개진과 함께 투표를 행사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를 장려하고 권장하여야 함에도,
- 관련 서류가 번거롭고 사정에 따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예상하여 조합에서 사전에 서류제출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조합원 가입 유보와 총회 참석을 제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임

3. 공증 면제의 필요성

□ 교육(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

- 교육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것이다. 학교기반의 조합은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가장 중요시하게 되며, 학생중심의 조합 운영을 위해 많은 수의 학생 참여와 활동 속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 과제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학생 누구나가 조합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함

□ 수요에 대응하는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 중앙정부에서 사회적경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청소년 대상 협동조합 교육일 것이라 판단되며,
- 학생들이 스스로 비영리 공익법인을 설립해보고 민주적인 사업체를 직접 운영해보면서 사업기획과 다양한 체험기회제공과 함께 기업가 정신 등을 체득하는 실제교육의 장으로서 교육협동조합은 그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함
-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안정적인 총회의사록 공증을 염두에 두어 조합원 중 학생들의 참여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점과 조합 설립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설립동의자 모집을 최소화하고 설립 이후 학생 조합원을

적극 모집하고 있는 등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제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할 때

- 청소년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학교)협동조합의 확산을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공증면제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행정의 시대적인 과업이자 반드시 해결해주어야 할 과제임

4. 개선방안

□ 수요에 대응하는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의 예외조항에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추가

현행	개정안
<p>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법 제 6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p>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법 제 6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교육(학교)협동조합의 총회 및 의사록은 도 교육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청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교육청은 의사록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

□ 기타 개선사항

- 교육협동조합 업무의 교육감의 고유 사무화를 위한 법제화
 - 사업장이 학교인 경우로 한정하여 면제하여 타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차별화 또는 구분(교육부 고시)
- 교육부로부터 교육(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권한 시·도교육감으로 위임
 - 총회 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공증면제 요건을 확인하여 공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학생 참여율을 높이고
 - 인가 심사 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현장실사를 통해 최소한의 지도·감독으로 건전한 교육협동조합을 육성하고자 함
 - 또한 지정기부금 신청 시 요건 등을 확인한 후 기획재정부로 추천함으로써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 시·도별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수요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설립·운영 조합 수가 급증하더라도 1~2명의 인원 보충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임

[참고] 경기도내 교육협동조합 현황

연번	학교명	학교 유형	주사업	인가일	조합원현황				
					학생	학부모	주민	교직원	계
1	(조현초)큰꿈교육사회적협동조합	공립	돌봄방과후	16.02.15					
2	사회적협동조합 의정부여자중학교 모꼬지	공립	학교가게	14.08.07		17		16	33
3	북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공립	학교가게	13.09.03	215	18	1	34	268
4	덕이고 교육복지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공립	학교가게	14.01.08	1,117	46		75	1,238
5	한문영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사립	학교가게	14.12.19	6	8	11	46	71
6	한국도예고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공립	학교가게	14.12.19	65	8	16	17	106
7	홍덕고 사회적협동조합 홍덕클럽	공립	학교가게	15.02.25	289	118	65	42	514
8	기흥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공립	학교가게	15.03.24	65	46		6	117

9	신길고 마을교육공동체 개방형사회적협동조합	공립	학교가게	15.12.02	82	24	11	48	165
10	마을교육경제공동체 별내고사회적협동조합	공립	학교가게	16.04.22	54	9	3	55	121
11	현암고마을교육공동체 개방형사회적협동조합	공립	학교가게	16.06.27	55	24	4	21	104
12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장호원증점	공립	학교가게	16.08.26	모집중				
13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매홀고점	공립	학교가게	16.08.26	모집중				
14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산본공고점	공립	학교가게	16.08.26	모집중				
15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분당경영고점	공립	학교가게	16.08.26	모집중				
16	사회적협동조합 술이홀 통일출판사	사립	출판	16.09.26					
17	운양고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공립	학교가게	인가 신청					

대학생협의 공증면제 과정 및 의의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권 중 탁

1. 공증면제 진행 경과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 (2010.09.23.)

- 법 개정 전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규제가 보편화되지 않은 관계로 공증에 대한 애로가 없었으나, 이후 사무장 중심의 의료생협의 탈법적 사례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설립에 따른 행정이 강화됨

나. 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2013.07.)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생협 우선추진의사 확인 (2015.06)

라. 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정관 변경

- 연합회 사업의 종류에 '회원조합 총회 적법성 확인에 관한 사업' 명시
- 연합회 '회원조합 총회 적법성 확인에 관한 규약' 제정

마. 정관변경인가 / 공정거래위원회

바. 의사록 공증 제외 법인 추천 요청(2016.01.15.) / 연합회 → 공정거래위원회

사. 의사록 공증 제외 법인 추천(2016.01.27.) / 공정거래위원회 → 법무부

아.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확정 (2016.03.30. 법무부고시 제2016-121호)

2. 공증면제 관련 정부부처 자료

가. 기획재정부

(1)협동조합기본법 업무지침

5) 법인등기 관련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 (공증 면제) 설립 등기를 할 때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무부의 공증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 받을 필요 없음
- (추천 신청) 공증 면제를 희망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를 소관부처에 제출함
- (면제 추천) 소관부처는 공증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법무과)에 추천함**

☞ 총회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서류

1. 소관부처 추천 공문
2. 소관부처 검토의견서(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조문 포함)
3. 공증면제 추천 신청서
4. 설립인가증 사본
5. 정관
6. 기타 참고자료

- 법무부는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를 개정하여 대상기관을 추가고시 함
- 등기신청 시 **공증문서 대신 법무부 고시**를 제출하면 됨

(2)보도자료(2012.11.28.자 보도자료 중 법제도 개선과제 추진현황)

추진과제 2-11 의사록 인증 예외법인에 협동조합 등 추가 / 협동조합 시행 후 개별 사안별 고시 예정 / 법무부

나. 법무부 (법무과 공증업무 민원답변 2013.01.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같이 특별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협동조합이라면 특별법에 근거하거나 주무관청이 허가함에 있어 특별한 심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 절차를 거쳐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추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증면제를 위한 절차

가. 총회 공증면제를 위한 ‘입회 신청서 송부’

회원조합 ▶ 연합회 (총회 개최 7일전)

나. 연합회 임직원의 총회 입회

정관의 총회절차 준수여부, 총회 성원, 안건의 의결여부 등 총회가 공지한 사항 일체

다. 총회 회의록 및 조합원명부 송부

회원조합 ▶ 연합회

라. ‘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서’ 발부

연합회 ▶ 회원조합

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서

조 합 명 :

주 소 :

총 회 명 :

총회일시 :

총회장소 :

재적인원 :

참석인원 :

주요의결 :

입회인 ○○○은(한국대학생협연합회) 상기와 같이 진행된 ○○대학생협 총회에 입회하여 총회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입 회 인 : ○ ○ ○ (인)

4. 학교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으로 조합원 참여로 총회가 운영되므로 그 자체로 ‘진실’ 합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내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민

주적이며 개방적인 협동조합으로서, 총회의 의사가 참여한 조합원의 1인 1표에 의거 결정되어 운영되므로 의사와 반하는 내용이 총회의사록에 명기될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또한 법률로서 관리감독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명시되어 수시로 그 관리감독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정요식적인 공증의 절차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6. 공증면제는 조합의 민주성을 강화하여 참여를 통한 운영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공증으로 인한 비용부담은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구성을 회피하게 되는 유력한 장애가 되며, 이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행정적 장애로 작용하여 운영애로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7. 학교협동조합의 공증업무는 학교로 이관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는 학교구성원의 교육과 복지 등에 대한 총괄적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교육부 - 교육청 - 학교로 공증에 관한 행정업무가 위임되어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게끔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발제문에서 관리대상이 관리자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는 학교본연의 업무와 협동조합의 운영을 구분하여 사고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것입니다.

6. 이외로도, 학교협동조합에 요구되어진 비현실적 규제조항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7.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확산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 총괄청인 교육부에 '학교협동조합 전담기구' 가 필요합니다.

○ 전담기구의 역할

- 가.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수립
- 나.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 다. 국가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 라. 학교협동조합의 발전 전략 및 기반 구성에 관한 사항
- 마. 학교협동조합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바. 학교협동조합 실태조사와 그 결과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구성에 관한 사항 등

학교협동조합 공증 면제 추천시 쟁점 및 애로점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오 용 환

구두 토론 예정

학교협동조합 의사록 인증 면제 기준 검토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양동수

1. '학교협동조합' 의 정의 및 법적 성격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정의에 따르면, 학교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한편 한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048호, 2015. 10. 8. 제정 및 시행)'를 통해 위 ICA의 정의와 유사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¹⁾, 아직까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법령상의 정의나 이를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은 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사회적협동조합²⁾으로 설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협동조합의 정의와 그 요건 혹은 그 유형에 대해 관련법(교육관련법 혹은 협동조합기본법 등)에서 그 내용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증면제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

-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학교협동조합은 학교매점, 체험학습, 마을학교 등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1인 1표의 원리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소통 및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이 부여됨을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함께 학교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도모합니다. 이에 학교협동조합은 그 특성상 미성년 학생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 조합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협동조합에서의 민주적인 소통 및 의사결정을 통해 학교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교육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학생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조합원들이 참여한 총회 의사록 등을 공증 받아 변경 등기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및 위임을 받아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학교협동조합은 그 설립 및 교육목적을 추구할수록 업무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학교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사실상 학교협동조합의 정의 및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이하, ‘방과후교실 학교협동조합 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후교실 학교협동조합의 경우, 학교 관계자 및 미성년인 학생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협동조합에 비해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교육 목적이 덜하며, 그 일부는 방과후교육사업을 영위하는 영리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교협동조합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공증의무 면제의 실익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일부 학교협동조합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교협동조합’이라는 특정 명칭으로 공증면제가 지정 고시되는 것은 공증의무 면제제도가 법률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공익성, 감독기관의 감독여부 및 공증면제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사록 인증 면제의 실익이 있는 학교협동조합만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준 설정 방안

가. 단기적으로 현실 가능한 방안

1) 학교협동조합을 구분하는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고시하는 방안

우선 의사록 인증 면제가 필요한 학교협동조합을 기타 학교협동조합과 구분할 수 있는 요건들을 나열하여 고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학교 교내를 사업구획으로 하면서, 000명 이상의 학교 관계자, 학생, 학부모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의 00% 이상이 학생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고시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명칭 또는 특정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특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기공무원 등이 법무부 고시에 명시된 등기 신청 법인의 명칭 또는 설립 근거로서 의사록 인증 면제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명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시하는 것은 학교협동조합을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우선적으로 합의되어야 할 뿐 아니라 법무부와 법무부 고시에 대한 내부지침에 기반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으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감독 주무관청의 내부지침으로 학교협동조합 구분 기준을 두어 의사록인증 면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교협동조합을 구분하여 감독 주무관청이 추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고시하는 방안

[예시]

‘학교협동조합의 의사록인증 면제와 관련하여, 각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위 방안 역시 학교협동조합 구분 기준이 먼저 정립되어야 하며, 감독 주무관청과의 추천 여부 및 방식에 대하여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아가 법무부가 위 방안으로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개별 학교협동조합이 인증 면제를 신청하여 개별 학교협동조합으로 고시하는 방안

감독 주무관청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의사록 인증 면제법인 신청이 가능한 학교협동조합의 유형을 지정해 주고, 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개별 학교협동조합이 개별적으로 혹은 분기별로 모여서 한꺼번에 감독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신청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 방안은 현재 법무부가 의사록 인증면제 법인을 고시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해당하므로, 교육부 등 주무관청과 의사록 인증 면제 법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학교협동조합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에 해당하는 학교협동조합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방과후사업자 중심의 사회적협동조합도 결국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그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될 것이므로, 추구하는 교육사업의 공익적 목적보다는 규모 또는 조합원 구성의 기준이 세부화된 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장기적인 방안

1) 학교협동조합연합회 및 연합회 회원조합으로 고시하는 방안

최근에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이 연합회 및 연합회 회원조합으로 의사록 인증 제외 법인으로 지정된 방식과 같은 구조로써, 학교협동조합도 협동조합기본법에 기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연합회가 만들어진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정고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협동조합연합회 및 연합회 회원조합’

2) 협동조합기본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기본법 등의 특정 조항에 기반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고시하는 방안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주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할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학교협동조합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학교협동조합의 사업근거를 두고, 하위 법령이나 교육부 조례로서 학교협동조합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00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혹은 학교협동조합)’ 등으로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령이 설립근거가 되는 경우, 법무부 고시 제2010-700호(2010. 11. 15.)에 의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178-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고시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고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조례가 설립근거가 되는 경우는 고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학교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이에 기반하여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으로 고시하는 방안

학교협동조합기본법으로 학교협동조합의 정의 및 설립절차를 명시하고 ‘학교협동조합기본법 제 0조 제0호 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으로 고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예상쟁점 및 지원방향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이 용 환

I. 들어가며

학교협동조합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교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 문제에 직접 참여하여 학교 자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며 구체적인 의견을 만들어 협업과 학습을 통한 협동문화를 창출합니다. 나아가서 졸업생, 지역주민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삶을 경험하고, 공동체적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은 매점 형태와 방과후학교 형태가 있으며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및 센터와 함께 학교협동조합 설립,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I.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예상쟁점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의 발기인 모집을 시작으로 공증 및 등기를 거쳐 인가증 발급까지 일련의 절차를 밟아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가운데에서 공증과 관련한 부분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학교협동조합의 경우 학교 특성상 매년 임원이 교체 되는 등 구성원의 변경 등으로 공증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의 취지를 생각하면 학생들의 조합원으로서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복잡한 서류 구비와 절차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인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공증 방식이 아닌 변호사 참관 공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매년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현재 학교협동조합의 재정 상황으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증면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 1. 업무 부담

주무관청인 교육부 대신 교육청이 공중 면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하고는 1~2명이 학교협동조합 업무를 맡고 있거나, 심지어 관련 업무 담당이 없는 시도교육청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중 면제 업무까지 주어진다면 담당자에게 업무 부담 문제가 크게 다가올 것이고 특히 학교협동조합 사업은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관리감독에 관한 실무까지 교육청에서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학교협동조합이 점차 확대가 되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학교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또한 확장될 것이고, 그에 따라 큰 무리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므로 그전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쟁점2 . 업무 역할

업무 역할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비영리 법인 각종 승인, 허가, 지도감독,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타 부서의 비영리 법인 팀이 따로 있는데 학교협동조합 또한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중 면제에 관한 관리감독을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현 부서(참여협력담당관 지역사회협력팀)에서 진행 하게 되었을 때,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보면 업무의 통일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추후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법인 업무가 생길 경우 법인 팀이 아닌 사업 담당부서에서 하게 될 경우가 충분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업무 역할이 모호해지게 되는 난점이 있습니다.

쟁점3. 형평성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학교협동조합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학교에서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학교협동조합만 공중 면제를 해줄 경우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학교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미성년자인 학생이 포함된 특수성이 있는 만큼 학교협동조합이 공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인 교육부에서 적절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절차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Ⅲ.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방향

학교협동조합은 단순히 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값싸게 공급하며 동시에 민주시민 교육, 생생한 경제 체험을 위한 교육적 공간으로서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증 면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7년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학교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인가 지원, 전문 컨설팅을 통한 현장 지원, 수요자 중심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나아가 지역별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조직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율을 통하여 지원센터가 학교협동조합 공증 면제에 대한 역할을 수행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하여 학교협동조합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몇 가지 쟁점 사항이 있지만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이 아직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부, 서울시, 자치구 등 관계 기관들과의 끊임없는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학교협동조합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